

교직원 포상 규정

제 정 : 2009. 12. 1.

개 정 : 2025. 8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아래 각호로 구분된다.

1.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상, 공적표창
2. 외부 인사에 대한 공로상

제4조(장기근속상) ① 장기근속상은 10년 근속, 20년 근속, 30년 근속, 4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.

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년, 월, 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, 재직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,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근속기간 중 휴직기간은 직원인사규정 제62조에 따른다.

제5조(공적표창) ① 공적표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, 타의 모범이 되는 교직원에게 수여한다.

1.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,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
2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
3. 기타 총장이 공적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
② 포상후보자가 교원일 경우 학부장이, 포상후보자가 직원일 경우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.

③ 추천 양식은 <별지 1호>와 같다.

제6조(공로상) 공로상은 외부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로 한다.

1. 본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단체
2. 기타 총장이 공로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

제7조(공적심사)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기획관리처장과 교학지원처장, 원각도서관장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,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.

제9조(포상권자) 포상은 총장 명의로 하고 총장이 수여한다.

제10조(포상업무) ① 포상업무의 주관은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에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총장 결재 후 포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.

제11조(결격자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 또는 포상추천자가 될 수 없다.

1. 직원인사규정 제75조(징계)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, 직원인사규정 제76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및 제77조(징계의 경감)에 의거 징계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
2. 직원인사규정 제76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에 의거 당 징계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2조(포상 방법 및 대우) ① 포상 방법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부상의 수여 여부 및 종류는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교직원이 공적표창을 받거나, 총장의 추천으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,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인사고과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시기) ① 공적표창은 매년 12월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장기근속상은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퇴직일을 기준으로 장기근속상 수여대상이 되는 퇴직자에게는 해당 퇴직일에 장기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(기타)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